

2009. 12. 14(월)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4
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5.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20
6.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7.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26
- 마. 의안번호 : 제2009-42호

2.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거주기간(1년 이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걸 맞는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의 전입 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
 - 현행 :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개정 :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거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로 그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26
- 마. 의안번호 : 제2009-43호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규정이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시행 및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총칙[제1장]
 - 조례의 목적과 관리책임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공유재산 통칙[제2장]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안 제 5조)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

다. 행정재산[제3장]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라. 일반재산[제4장]

-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함(안 제26조)
-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함(안 제 29조)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함(안 제34조)

마. 공유임야 관리[제5장]

-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함(안 제38조)

바. 청사관리[제6장]

-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함(안 제39조)

사. 관사관리[제7장]

- 관사는 군수·부군수 등 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함(안 제44조)

아. 물품관리[제8장]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함(안 제54조)
-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60조)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

자. 보칙[제9장]

- 변상금의 부과절차, 분할납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 제81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률과 보상금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

차. 부칙

-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부칙으로 규정함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 8.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창군 물품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은 9장 86조 부칙 5조로 배열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총칙적인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2조까지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3조부터 안 제79조까지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0조부터 안 제86조까지는 보칙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상기와 같이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발 의 자 : 총무위원회

나. 수정내용 : 붙임과 같음

○ 부칙 제4조 8항 중 일부삭제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u>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연 100분의 6”을 “연 100분의 4”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3항제4호”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5년”을 “10년”으로 한다.</u> ⑨ ~ ⑪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삭제> ⑨ ~ ⑪ (현행과 같음)	

[거 창 군 세 감 면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26
- 마. 의안번호 : 제2009-44호

2. 개정이유

거창군세 감면시한(2009.12.31)이 도래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거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8조의4에 ‘자활용사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1항).

다.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라. 현행 지방세법상(제272조제5항)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므로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또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그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6조).

마.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09.9.30 현재 국회 상정)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의2 삭제)

바.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안 제13조·안 제15조의3·안 제15조의4·안 제21조·안 제22조 및 안 제28조)

○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주차장용 부동산(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물류산업(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 되는 규정과 중복으로 삭제함(안 제11조).

아.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함(안 제14조).

○ 지방세법 개정('09.2.6)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1천분의 1.5 적용 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 상쇄
자.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감면시한('09년말)이 도래하여 감면을 폐지함(안 제15조의2).

차.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각 조문에서 삭제하여 제7장 보칙으로 이관·신설함(안 제16조제2항 단서·안 제18조·안 제19조 삭제 및 안 제29조의4 신설).

카. 감면신청과 감면통지에 따른 관련 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과 일치하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삭제함(안 제30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삭제).

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표현 등을 논리에 맞게 정비함.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26
- 마. 의안번호 : 제2009-53호

2. 제안이유

- 1970년 진주측후소 거창분실로 창설되어 2008. 10. 22일자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근무인원 및 각종 관측 장비의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기상대 관측시설 및 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고자 함.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가 2009년 1월 1일 1001빌딩 2층을 임차하여 개청 식을 가졌으나, 사회 봉사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시행으로 보호관찰소 업무가 늘어나고, 근무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에 따른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고자 함.

- 웰빙 스포츠 메카인 거창스포츠파크에서 많은 군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나, 인근에 소재한 양돈축사의 악취로 인해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쾌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양돈축사를 매입하여 레포츠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함.
- 늘어나는 여가활동 시간과 스포츠를 즐기는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파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함.
-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단위사업으로 산·학·연·관 협력 체제가 되도록 승강기 전문단지와 연계한 거창승강기센터를 건립하여 신기술개발 촉진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거창승강기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자재 공급 및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인한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
-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 입주 예정 기업에게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취득·처분재산의 표시

1.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사 업 명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물건 및 지목	수 량	공시지가/ 사기표준액/ 사업비	비 고
계		6건		56,950.41	2,140,168	
거창기상대 부지	토지	거창읍 정장리 967-7번지외 5필지	토지	10,000	156,251	사업비 : 600백만원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8번지외 4필지	토지	3,420	119,495	사업비 : 300백만원
거창스포츠파크 주변 부지	건물/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61번지외 9필지	계	11,500.41	147,182	사업비 : 2,500백만원
			건물	1,011.41	12,033	
			토지	10,489	135,149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 부지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5번지외 7필지	토지	15,005	226,344	사업비 : 1,300백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거점APC내)	건물	495	1,450,000	
거창승강기센터 신축 부지	토지	남상면 월평리 1544번지외 7필지	토지	16,530	40,896	사업비 : 500백만원

2.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사 업 명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물건 및 지목	수 량	공시지가	비 고
계		1건		40,369	701,790	
정장리 일반공업 지역 공장용지	토지	거창읍 정장리 83번지외 5필지	토지	40,369	701,790	

4. 검토보고 요지

- 거창기상대 부지 매입안은 2008년 10월 22일자로 진주측 후소 거창분실에서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근무인원 및 각종 관측 장비 등의 증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기상대 관측시설 및 청사 신축 부지를 우리 군이 확보하여 교환하려는 것으로

- 2009년 당초 예산에서 기상대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기 확보한 예산으로는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한 기상관측환경 기준 10,000m²」에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2009년 확보한 3억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6억원을 재편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임.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 매입안은 거창읍 상림리 796번지 1001빌딩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가 늘어나고 근무인원이 증원되는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가 협소하여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임.

⇒ 거창기상대 부지와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는 국가에서 매입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제공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거창스포츠파크 주변부지 매입안은 거창스포츠파크에 인접하고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거창읍 양평리 1161번지 외 9필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2009년 11월 12일 거창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음.
-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양평리 1125번지 외 7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 1면, 부대시설 조성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2009년 10월 13일 거창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음.
- 거창승강기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일원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종합연구 개발동 등 총사업비 144억원(국비 92억원, 도비 26억원, 군비 2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당초 계획에는 부지매입비 등 군비 부담 계획이 없었는데 군비부담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안은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의 거점 APC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 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처분안은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 외 35필지에 2008년 9월 8일 정장일반공업지역내 공장용지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문화재 시굴

사업, 편입물건 보상계획, 기반시설사업 등 공장용지 조성 사업을 2009년 11월 16일을 완료하였음.

- 완료된 공장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 창 군 사 이 버 군 민 제 도 운 영 조 례 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26
- 마. 의안번호 : 제2009-45호

2. 제안이유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랑 사이버 군민화를 통한 군 발전 인적자원 발굴을 도모하고, 도·농 간 정보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여 군에 대한 관심유도 및 홍보를 통한 군세확장과 더불어 대 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사이버거창군민의 자격 및 등록, 지원사업, 혜택 등 사이버군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주자들 누구나 군과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자는 사이버거창군민이 될 수 있음

- 사이버거창군민은 사이버거창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음
- 군수는 사이버거창홈페이지를 군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구축·운영하고 사이버거창군민약관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며, 사이버거창 홈페이지의 개선, 민간교류 활성화, 각종 정보의 제공, 이벤트 등 개최, 사이버거창 가맹점 확보 및 관리 등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이버거창군민에게는 사이버거창군민증 수여, 수송대관람료의 면제, 사이버거창가맹점 발행 할인쿠폰 제공,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각종 정보의 제공,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사이버거창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와 사이버농원 농산물 체험권 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음

다.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그 밖에 다른 조례의 준용, 시행규칙등 조례의 절차적·보충적인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사이버주민제도 운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주민과 우리 군민의 상호간 정보교류 및 사회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사이버 주민에게는 우리 군의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등 경제적, 사회적 이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1인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26
- 마. 의안번호 : 제2009-48호

2. 개정이유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농촌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과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신설 및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제4호·제8호, 안 제14조).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또한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1. 12.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1인
- 다. 회부일자 : 2009. 11.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2. 26
- 마. 의안번호 : 제2009-49호

2. 개정이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으므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유치원에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확대하여 유치원에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